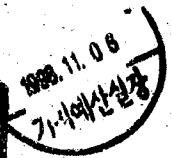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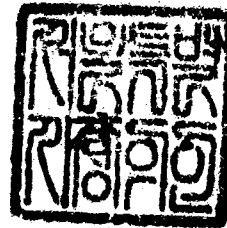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정

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8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정폐지규정안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사업(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 등)의 일부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하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임시직제를 구성·운영할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등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직제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